

교육·복지·사람 중심



제173회 구의회 임시회

2013. 2.22 ~ 3.5



2013년 주요업무 보고



위 생 과

보고 순서

I . 일 반 현 황	••••	1
II . 2013 주요업무 계획	••••	4
III . 신규·주요투자사업	••••	26

I. 일반 현황

1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기 능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정 원	25	-	1	5	5	7	5	-	-	1	1	-
현 원	24	-	1	6	8	1	3	-	2	2	1	-
과부족	-1	-	-	+1	+3	-6	-2	-	+2	+1	-	-

2 조 직

5팀



3

주요시설 및 장비

구분	명칭	현황	비고
위생점검 주요장비 (9종60대)	차량	마티즈(2005년식)	2005.1월 구입
		아반떼(2012년식)	2013.1월 임차
	갤럭시탭	13대	2011.10월 식품의약안전청 지원
	식품 등 유해물질 측정기	3대	2012.5월 인센티브사업비 지출
	손씻기 뷰박스	20대	식중독예방 손씻기 장비
	ATP측정기	4대	식품 위생점검 장비
	적외선·디지털 온도계	14대	
	미생물 배양기	1대	
	차량용 냉장고	2대	
	실내공기질 측정기	1대	미세먼지 측정

4

예산현황

사업별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총계		672,729	810,152	△137,423
구비	소계	198,302	199,876	△1,574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61,876	60,525	1,351
	기본경비	136,426	139,351	△2,925
기금	소계	474,427	610,276	△135,849
	식품진흥운영	474,427	610,276	△135,849

목 차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1. 식품진흥기금 운용	4
2.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강화	6
3. 식중독 예방활동	8
4.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강화	10
5. 식품접객업소 위생 사각지대 해소	13
6. 식품안전관리 체계 확립	15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18
8.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정착	19
9. 음식점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	21
10.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22
11. 수질검사 및 위생점검	23
12.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24
13.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25

〈신규·주요투자사업〉

1. 주택가 유해업소 특별위생점검	26
2. 먹는물 개선사업	28

II. 주요 업무추진 계획

1 식품진흥기금 운용

음식문화개선 사업지원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 지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지원 등 식품진흥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함

사업목표

- 식품진흥기금 운용 내실화를 통한 식품위생 및 국민 식품문화 향상

추진방향

- 기금운용 여유자금의 적정 예치 및 예탁으로 기금 활용 적정화
- 기금의 용자기준 준수 및 용도에 적합한 합리적인 운용

추진실적(2012년)

(천 원)

내 용	실적	비고
고유목적사업 지원	292,895	
- 식중독 예방관리	14,490	
- 식품안전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34,550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99,600	
- 음식문화개선 홍보 등	42,763	
- 식품위생 수준 향상	36,448	시보조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6,480	시보조금
- 식생활 정보센터	38,564	시보조금
식품접객업소 용자 지원	154,000	

세부 추진계획

- 세부운용 계획

- 고유목적사업 지원 : 174,427천원
- 식중독 예방관리 : 24,705천원
- 식품안전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 2,84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 116,122천원
- 음식문화개선 홍보 등 : 30,760천원
- 식품접객업소 용자 지원 : 300,000천원

용자대상	지원구분	용자내역(천원)	이율	상환조건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구	200,000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구	60,000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음식점 화장실 개선자금	구	40,000	연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용자지원 홍보 : 구 홈페이지, 관련협회, 지역신문, 구·보건소식지 등

※ 시 기금 용자 예정 배정액 : 175,000천원

소요예산(기금운용 계획)

(단위 : 천원)

총 액	용자금	사업비	예치금
1,317,417	300,000	174,427	842,990

2 모범음식점 육성 · 관리 강화

음식문화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업소를 관리·육성하고 우수한 모범업소를 신규 지정하여 관내 음식점 이용 시민들에게 향상된 위생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함.

□ 사업목표

- 쾌적한 위생환경 및 서비스 제공으로 선진 음식문화 정착

□ 추진방향

- 모범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 심사 강화로 모범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

□ 추진실적

-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연2회) : 신청업소 40개소 중 26개소 지정
 - 모범음식점 (정기:매년10월/ 수시) 재지정 심사 : 213개소
 - 재지정 192개소, 지정취소 21개소(기준미달10, 영업정지이상3, 자진폐업8)
- 모범음식점 지원
 - 모범업소 육성자금 융자 지원 : 1개소 45,000천원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 : 30개소 2,640천원
 - 나트륨 저감 실천을 위한 염도측정기 지원 : 208개소 19,988천원
 - 「맛있는 영등포 Tastreet」 책자 제작 : 86개소 20,748천원
- 모범음식점 이용 홍보
 - 전국시군구,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 이용 홍보 : 8회

□ 세부 추진계획

-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2013년 1월 기준)

업 태 별							면 적 별(m ²)					
계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뷔페	기타	계	80미만	80~99	100~199	200~299	300이상
218	138	21	35	11	6	7	218	16	22	89	32	59

- 모범음식점 관리 (목표 200개소, 일반음식점 총수의 5%이내)

- 신규지정 : 연2회(상·하반기)
- 재 지 정 : 정기: 매년10월 / 수시: 업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지정취소 : 지정기준 미달, 영업정지이상, 폐업 등
- ※ 모범음식점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향상에 주력하여 이용 고객의 만족도 제고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주요 점검내용(평가기준: 22개항목 85점이상)
 - 좋은식단 이행여부 주요 점검내용(평가기준: 공통사항10개항목, 업태별2~3개항목)
- 모범음식점 지원
 - 모범업소 육성자금 융자 지원 : 업소당 50백만원이내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 : 업소당 88천원(신규, 분실·훼손 등)
- 모범음식점 이용 홍보 강화
 - 전국시군구 모범음식점 이용 홍보 : 연4회이상
 - 구소식지,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등에 보도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 게재

□ **소요예산** : 30,760천원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 20개소 1,760천원
- 「맛있는 영등포 Tastreet」 2,000부 : 29,000천원

3

식중독 예방활동

지구 온난화 현상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식품이 위해 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식품안전 정착

□ 사업목표

-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예방 교육 및 홍보로 식중독 사전예방과 위생관리 수준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지역주민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로 지역사회 식중독 예방의식 고취
-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식중독 예방 강화

□ 추진실적

내 용	실 적	비고
집중관리시설 위생점검	2회 481개소	
식중독지수 문자서비스(SMS)	75회	
1830 손씻기 체험관 운영	120개소	
식중독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	21회	

□ 세부 추진계획

- 중점추진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 및 지역주민
 - 집중관리시설 위생점검
 - 기 간 : 집단급식소 (3월, 9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10월)
 - 대 상 : 321개소

(단위 : 개소)

합 계	집 단 급 식 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식자재납품업소)
	소 계	학 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기타 (산업체 등)	
321	260	43	25	54	8	130	61

- 점 검 반 : 민·관 합동점검 실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점검내용 : 간이키트장비 활용 종사자 손, 칼, 도마, 행주 등 검사, 식자재관리
-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실시 : 연 중
- 대 상 : 일반음식점, 동 주민센터 통장 및 직능단체, 공무원 등
- 발송건수 : 90회(126,600건)
- 발송기준 : 식중독지수가 50~85인 경고단계(4~6시간내 음식물부패)이상
- 『1830 손씻기 체험관』 운영 : 연 중
- 상설 체험관 : 2개소(보건소 2층, 글로벌다문화센터)
- 이동 체험관 : 100개소(학교, 병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이동체험관)
- 식중독 예방 홍보 다양화 : 연 중
- 구민대상 홍보 및 체험실시 : 영등포아카데미 등 구민 교육 및 행사시 병행
- 캠페인 실시 : 연 2회(식품접객업 영업주, 음식점협회, 관련 공무원 등 200명)
- 유비쿼터스 서비스 : SNS, 트위터, QR코드, IP-TV, 전광판 등 활용 실시간 홍보
- 대중매체 홍보 : 디지털 홍보관, 구·보건소식지 및 홈페이지, 지역언론, 지역방송 등

□ **소요예산** : 27,105천원(구기금)

- 간이미생물 검사관 2,435(9,740원×250조)
- ATP측정기용 시액 4,320(3,600원×1,200조)
- 식중독예방 홍보물 8,000(100원×20,000부×4종)
- 손씻기검사용특수로션 1,650(33,000원×50개)
- 식중독지수 전광판 구입 3,300(165,000원×20개)
-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 5,000(10,000원×500부)
- 식중독예방 활동비 2,400(40,000원×2명×30일)

4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강화

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 위반으로 각종 주민 불편사항이 증가되어 소비자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을 계절·테마별로 특성화하여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위생질서 확립과 음식문화개선을 통해 구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함

□ 사업목표

- 테마별 자체특별 기획점검 실시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 식품접객업소 야간 민·관합동 점검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
- 퇴·변태업소(카페밀집지역) 집중점검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
- 서울시 자치구 교차 민·관합동 점검으로 부패방지 및 위생수준 향상
- 단속예고제 시행으로 영업주 사전진단 기회제공
- 무허가(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 근절

□ 추진방향

- 테마별 기획점검 및 야간단속 시 특별점검반 편성 운영 : 1개반 5명
[공무원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 퇴·변태영업(카페형 일반음식점) 단속 : 분기별 1회
=> 영등포경찰서 합동점검을 통한 단속효율성 제고
- 미점검업소를 순차적으로 단속함으로써 1년1업소1회 점검(민원발생시 제외)
=> 단속 평등화를 통한 업주와의 신뢰성 제고

□ 추진실적(2012년)

내 용	실 적	비고
테마별 자체특별 기획점검	18회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96회(2,382개소)	
퇴폐·변태업소(카페밀집지역)집중점검	2회	
서울시 교차 민관합동 단속참여	20회	
단속예고제 시행	20회	
무허가(무신고)식품접객업소 단속	2회	

* 서울시 교차점검 4회 미통보(서울시 사정으로 단속 취소)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 중

○ 대상업소 : 8,038개소

(단위 : 개소)

계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8,038	6,157	204	302	1,145	129	101

□ 세부추진 계획

○ 테마별 자체특별 기획점검

- 점검시기 : 하절기, 연말연시, 설·추석 명절 등
- 대상업소 : 집단급식소, 여름철 보양식전문점, 핫집,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내 음식점 등
- 점 검 반 : 1개반 5명[공무원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 점검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관리기준 적합여부 등

○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 주 2회 실시

- 대상업소 :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 점 검 반 : 1개반 5명[공무원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 점검내용 : 청소년 유해행위(출입, 고용, 주류제공), 위생관리기준 적합여부 등

○ 퇴·변태업소(카페밀집지역) 집중점검

- 위 치 : 당산동 및 대림동, 양평동 일대
- 대상업소 : 카페형 일반음식점
- 점 검 반 : 4인1조 2개반[영등포경찰서와 합동점검]
- 점검횟수 : 연 4회(분기별 1회)
- 점검내용 : 유흥접객행위 및 퇴·변태행위, 위생관리기준 적합여부 등

○ 서울시 자치구 교차 민·관 합동 단속 참여

- 점검목적 : 자치구를 교차 점검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위생수준 향상
- 기 간 : 월 2회(주간 1, 야간 1)
-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 점검반 운영 : 서울시 전체 4인 1조 25개반
(공무원 50, 서울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
- 점검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관리기준 적합여부 등

- 단속예고제 시행
 - 단속계획 처벌규정 등을 사전 예고하여 영업주에게 사전진단 기회부여
 - 유관기관(경찰서, 교육청) 및 소비자감시원 합동단속으로 단속 효율성 제고
- 무허가(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단속
 - 무허가 식품조리 행위(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현장점검 및 위반업소 고발

기대효과

-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
- 퇴·변태업소 점검을 통한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사전점검을 통한 식중독 발생 예방

소요예산 : 23,256천원(구비 23,256천원)

5 식품접객업소 위생 사각지대 해소

식품접객업소 처분위주의 점검 대신 위생지도서비스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영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운영으로 처분 위주의 점검 대신 행정지도·계도 실시
-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운영으로 영업자 스스로 자체점검실시로 위생수준 향상 기회 부여

□ 추진방향

- 행정기관 주도의 위생지도점검을 영업자 스스로 자체점검
- 영업자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 위생지도점검 정착

□ 추진실적(2012년)

내 용	실 적	비고
식품접객업소 인터넷자율점검(서울시)	4회(9,052개소)	
식품접객업소 인터넷자율점검(자체)	1회(1,818개소)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10회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 중
- 현 황

유 형	위생지도서비스	區 인터넷 자율점검	서울시 인터넷 자율점검
대 상	- 150㎡ 미만 일반음식점	- 150㎡ 미만 일반음식점 - 유흥·단란주점	- 150㎡ 이상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제과점·집단급식소 - 100㎡ 이상 식품제조가공업 - 기타식품판매업+희망업소

□ **세부추진 계획**

○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운영

- 기 간 : 2013. 2 ~ 11월
- 대 상 : 2,000개소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업소 및 2012년 미지도 업소 (소주방, 호프, 카페 등 주류판매업소 제외)

- 점 검 반 : 2인1조 4개반(서울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주요내용 : 위생분야전반, 원산지표시, 잔반재사용, 각종 홍보사항 안내 등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위반업소 중 자체 시정 결과보고가 없는 업소에 대한 시정여부 확인점검
 - 미시정업소는 점검일부터 3일 이내 행정처분 조치

○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운영

【서울시 인터넷 자율점검】

- 기 간 : 2013. 1월 ~ 12월(연 4회)
- 대 상 : 2,339개소 (단위:개소)

계	일반음식점 (150㎡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제조가공 (100㎡이상)	기타식품	집단급식
2,339	638	1,145	129	101	35	31	260

- 세부내용

- 참여방법 : 영업자가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접속 후 자율점검표에 의거 입력
- 자율점검 미이행업소 현장지도점검 및 4번 연속참여업소 출입점검 면제
- 출입점검 면제기간 중 행정처분 적발시에는 점검면제 취소

【區 인터넷 자율점검】

- 목 적 : 위생지도서비스 및 서울시 인터넷자율점검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우리구 자체적인 자율점검을 실시 하여 위생사각지대 해소
- 기 간 : 2013. 6월 중(연1회)
- 대 상 : 일반음식점(150㎡미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 세부내용
 - 참여방법 : 영업자가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접속 후 자율점검표에 의거 입력
 - 자율점검 미 이행시 현장지도점검 대신 자율점검 독려

□ **기대효과**

○ 식품접객업소 처분 위주의 점검 대신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점검 참여분위기 조성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체감도 상승

□ **소요예산** : 4,000천원 (시비 4,000천원)

6 식품안전관리 체계 확립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와 식품의 생산과 유통의 다양화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 식품안전 관리지침에 의거 『Clean-Safe Food』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코자 함.

□ 사업목표

-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으로 국민건강 보호

□ 추진방향

- 유통식품 수거검사
-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 추진실적(2012년)

내 용	실 적	비 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767건	
식품제조가공업소 정기점검	136개소	
부패·변질 우려가 많은 식품제조업소(도시락, 면류) 특별점검	10개소	
명절, 하절기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떡류, 음료 등) 특별점검	30개소	
식품판매업 자율점검	2,604개소	

- 행정처분 : 141건
 - 과태료4, 영업정지13, 시정명령19, 품목정지5, 영업소폐쇄51, 고발49

□ 추진계획

- 유통식품 수거검사
 - 검사시기 : 연중(월 1~2회)
 - 수거대상 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제조·가공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학교주변 소규모 판매업소
570	120	2	28	20	400

- 중점 수거품목(수거목표 : 600건 이상)
 - 계절별 성수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시민다소비식품
 - 수입식품, 과자류, 초콜릿 등 어린이 기호식품

- 검사항목 : 식품 규격·기준, 식중독균 등 제품별 특성에 따른 검사
- 검사의뢰 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 조치 : 부적합제품 폐기처분 및 제조업체 행정처분
- 식품제조가공업 지도점검
 - 점검시기 : 연중(성수기·하절기 등 특별점검)
 - 점검대상 : 150개소
 - 식품제조 가공업소 정기점검 : 120개소
 - 설·추석 성수식품 식품제조업 특별점검(한과, 떡류 등) : 20개소
 - 부패·변질 우려가 많은 식품제조업소(도시락, 면류) : 5개소
 -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소(음료류, 아이스크림류) : 5개소
 - 점검내용
 - 무신고(허가)제품 사용 및 보관여부
 -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표시기준 준수, 위생상태 등 준수여부
 - 점검방법
 - 전년도 행정처분업소 중점 점검
 - 점검 사전예고로 영업주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식품판매업 자율점검
 - 기간 : 2013. 4월 ~ 11월
 - 자율점검 대상 : 2,544개소

(단위 : 개소)

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유통전문 판매업	식품소분업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2,543	595	109	93	1,209	61	476

※ 업종별 자율점검기간 중복으로 업소수가 적은 4개분야는 9월로 시기조정
 ⇒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수입판매업

- 자율점검내용
 -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 자율점검방법
 - 1차 : 업종별 자율 점검포 발송 후 영업주가 구청에 회신
 - 2차 : 자율점검 미실시 업소 현장 점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3차 :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업소 특별관리
 - 기간 : 2013. 3월 ~ 11월
 - 대상 : 20개소(외국인거주 밀집지역 내 식품판매업소 등)

- 주요내용

- 1단계 : 지역별 현황 및 실태조사
- 2단계 : 해당업소 식품안전관리 교육 및 제도
- 3단계 : 제도사항 미준수 업소 조치(고발 등)

□ **소요예산** : 20,560천원(구비 10,400, 구기금 10,160)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통, 소비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와 어린이 및 부모의 식품선택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균형 잡힌 어린이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 사업목표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 150명
- 어린이식품안전 동아리 운영 : 1개교 20명 내외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강화 : 월 1회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관리 : 3개소 추가(63개소⇒66개소)

□ 추진방향

-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내실화

□ 추진실적(2012년)

내 용	실 적	비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지정 운영	203명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24회 8,976개소	
『어린이식품안전 동아리』 운영	1개소(여의도초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12개소	

□ 추진계획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지정 운영
 - 초·중·고등학교(43개교) :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150명
 - 운영방법 : 학교별 전담관리원 지정 운영
- 『어린이식품안전 동아리』 운영
 - 대 상 : 초등학교 1개소(20명 내외)
 - 운영방법 : 영양교사 지도아래 방과 후 학습 또는 특별활동과 연계 토론, 체험, 견학 등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점검주기 : 초·중·고교 월1회
 - 점검내용 : 고열량 저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 판매행위 등
 - 점 검 반 :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용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관리
 - 대 상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3개소 이상 선정
· 위생설비를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
 -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 소요예산 : 46,920천원(국2,080, 시6,220, 구기금 38,620)

8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

수입 농·수·축산물의 증가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도의 지도점검 및 제도홍보를 강화하여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

□ 사업목표

- 맞춤형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 3,260개소 (중점점검업소 위주 단속)
- 쇠고기 유전자 수거검사 : 45건
-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교육 : 연40회

□ 추진방향

- 적발위주 감시가 아닌 맞춤형 지도서비스 제공으로 점검의 실효성 제고
- 원산지 표시제 품목 추가 및 확대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 세부 추진실적(2012년)

내 용	실적	비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7,340	
쇠고기 유전자 수거검사	62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교육	81	

□ 세부 추진계획

- 맞춤형 원산지 표시제 지도서비스
 - 점검대상 : 7,549개소 (목표:3,260개소)

내용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전체업소	7,549	6,157	1,132	260
점검대상	3,260	2,670	330	260

※ 전년도 미점검업소 및 행정지도업소, 식육 취급업소, 수산물 취급업소 등 (호프, 소주방 등 야간점검대상업소, 다방, 찻집 등 다류전문업소 제외)

- 대상품목 : 16종 (축산물5종, 농산물2종, 수산물9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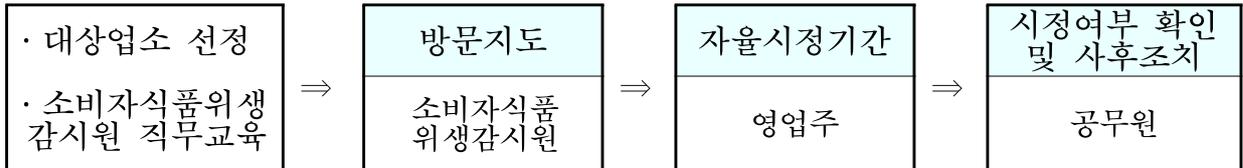
기존 (12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
6.28일 이후
4종 추가

변경 (16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배추및고춧가루),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양고기(염소 등 포함), 고등어, 갈치, 명태(복어등 전조품제외)

- 점검반운영 : 2인1조 3개반 6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4, 공무원2명)

- 점검방법 : 방문지도 → 자율시정기간 부여 → 시정여부 확인점검



- 점검내용

- 식육, 수산물,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및 종류 거짓표시·미표시 여부
- 메뉴판, 게시판 등 원산지 표시방법 적정 여부
-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및 냉장고 보관육 원산지 표시 여부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품목 추가 및 변경사항 안내 등

○ 쇠고기수거·유전자 검사 지속 추진

- 기 간 : 연중 (월별 1~2회)
- 대 상 : 국내산 한우 취급업소 또는 정육식당
- 수거방법 : 한우취급업소별 검체 유상수거 후 유전자검사 의뢰
-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한우, 비 한우 식별검사
- 검사결과 후 조치 : 비 한우 판정 시 원산지 거짓표시로 고발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교육

- 각종 행사시 홍보관 운영(연8회), 홍보 캠페인(연2회)
- 홍보매체 이용(월1회 이상) : 리플릿, 홈페이지, 지역신문, IP-TV 등
- 기존영업자 집합교육(연8회) : PPT자료를 이용한 시청각교육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집합교육(연10회) : 점검 전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

□ 기대효과

- 점검전 지도서비스제공으로 영업주 자율시정의지 고취 및 부담감 완화
-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

□ 소요예산 : 26,050천원(구비 6,850, 구기금 19,200)

9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 자율품목(16종) 중 수산물 2종이 의무표시 품목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자율표시품목을 조정하여 지속 추진함으로써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 참여유도 : 354개소

□ 추진방향

- 음식점 식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안심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영업활성화를 도모하는 원-원 전략사업 추진

□ 세부 추진실적(2012년)

내 용		실적	비고
자율확대표시제	300㎡이상 대형음식점	118	
	모범음식점	158	
원산지 자율확대표시관 배부		120개소	

□ 세부 추진계획

- 기 간 : 연 중
- 대상업소 : 354개소

계	300㎡이상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354	136	218

- 대상품목 : 권장표시품목 14종 (마늘 등 농산물7종, 복어 등 수산물7종)

기존 (16종)	변경 (14종)
<농산물7종> 고춧가루, 당근, 마늘, 양파, 양송이, 양배추, 콩 <수산물9종> 농어, 홍어, 복어, 조기, 꽃게, 문어, 북어, 갈치, 고등어	⇒ <농산물7종> 고춧가루, 당근, 마늘, 양파, 양송이, 양배추, 콩 <수산물7종> 농어, 홍어, 복어, 조기, 꽃게, 문어, 북어

- ※ 갈치, 고등어가 원산지 의무 표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자율확대표시대상에서 제외
- 점검반 : 1개반 3명 (공무원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 점검방법 : 음식점 규모별 대상업소 지정 실시
 - 점검내용 : 권장품목 안내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참여 독려
 - 지원사업 : 원산지 자율확대표시관 배부(신규 및 참여우수업소)

□ 소요예산 : 3,200천원(구기금 3,200)

10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공중위생서비스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행정력을 최소화시키고 영업주 책임감과 준법성을 갖고 자율적인 위생 점검을 생활화하도록 하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사업목표

- 자율적인 위생관리로 보건위생 향상 및 이용객의 건강증진

□ 추진방향

- 업종별로 연 1회 자율점검 실시

□ 추진실적(2012년)

(단위 : 개소)

내 용	실 적	비고
숙박업 자율점검	264	2개 폐업
미용업 자율점검	731	7개 폐업
이용업 자율점검	193	5개 폐업
세탁업 자율점검	237	6개 폐업
위생관리용역업 자율점검	234	
목욕장업 자율점검 (2013년 최초)		2012년도 현장방문 위생점검
위생처리업 등 자율점검 (2013년 최초)		

□ 세부 추진계획

- 대 상 : 7개 업종 1,742개소(업종별 월별 점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목욕장업	위생처리 업 등
업 소 수	1,742	263	750	185	235	249	56	4
점검시기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점검반 운영 : 1개반 3명(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점검방법 및 조치

- 1단계 : 자율점검표에 의한 영업주 자율점검 실시
- 2단계 : 미 이행업소에 대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 실시
- 3단계 :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 소요예산 : 180천원(구비 180천원)

11 수질검사 및 위생점검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목욕장업의 욕조수 또는 위생처리업 등 제품, 목욕장·숙박업의 먹는물 수질 및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위생용품의 유통방지 및 위해요인 사전 차단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목표

- 목욕장, 숙박업소의 시설, 설비 및 수질기준 위생적 관리

□ 추진방향

- 실질적인 수질 및 수거검사를 수시로 시행

□ 추진실적(2012년)

(단위 : 개소)

내 용	실 적	비고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141	
목욕장업 현장점검 및 수질검사	132	
위생처리업 현장점검 및 수거검사	8	
총계	281	

□ 세부 추진계획

- 대상: 7개 업종 300건 검사 및 위생점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목욕장업	위생처리업 등
업 소 수	1,742	263	750	185	235	249	56	4
점검시기	-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4, 10월	5, 9월

- 목욕장업 수질검사 (연 2회 4월, 10월) : 목욕장업 56개소(욕조수, 샤워기물)
- 위생처리업 수거검사 (연 2회 5월, 9월) : 물수건 외 3종(보건환경연구원)
- 목욕장업·숙박업 먹는물 검사 : 먹는물 개선사업(신규사업)
- 공중위생업소 ATP 검사 : 수질 『2013 서울시 생활보건과 계획』 에 의거 검사
 - 점검반 운영 : 5개반 11명(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명)
 - 점검방법 및 조치
 - 1단계 :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수질검사 및 위생점검
 - 2단계 : 의약과 검사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 3단계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 점검내용 : 『먹는물 관리법』 에 따른 수질기준, 욕조수 수질기준 검사 업종별 시설기준 등 법규 위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 소요예산 : 2,420천원(구비 2,420천원)

12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이용자의 업소 선택권 확대와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수준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구현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추진방향

- 2013. 4월 ~ 11월(차후 서울시 계획에 의거)

□ 추진실적(2012년)

(단위 : 개소)

내 용	실적	비고
세탁업 서비스평가	231	9개소 폐업
숙박업 서비스평가	241	15개소 휴업
위생관리용역업 서비스평가	215	10개소 직권폐업 진행 및 14개소 휴업
목욕장업 서비스평가	54	4개소 휴업

□ 세부 추진계획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주기 : 업종별 2년

- 대 상 : 2개 업종 935개소

(단위 : 개소)

계	미용업	이용업	비고
935	750	185	
평가시기	5월 ~ 6월	6월 ~ 7월	

- 점검반 운영 : 1개반 3명(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점검방법 및 조치

- 1단계 : 평가표에 의한 점검반의 평가 실시
- 2단계 : 3등급으로 결정 후 업소 통보 및 결과 공표
- 3단계 : 최우수 업소 포상 실시(게시판 수여)

- 평가내용:

- 업종별현황 :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소 등 기본사항
-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향해야 하는 항목으로 시설환경, 고객안전성, 서비스 질 영역

□ 소요예산 : 8,960천원(구비 8,960천원)

13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실내 공기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목표

- 공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추진방향

- 시 기 : 2013. 3월~10월 예정 (차후 서울시 계획에 의함)

추진실적

(단위 : 개소)

내 용	실 적	비 고
총 계	121	
업 무시 설	22	
복합건축물	90	
공 연 장	1	
혼인예식장	8	

세부 추진계획

- 대 상 : 공중이용시설 총 644개소 중 150개소

총 계(대상)	업무시설(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	복합건축물(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	공연장(객석 1,000석이상)	혼인예식장(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
644(150)	125(30)	511(112)	1(1)	7(7)

- 추진기간 : 2013. 3~ 10월
- 측정시설 선정: 이용시민이 많은 취약시설 중점 실시
- 측정항목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4개 항목)
- 측정반 운영 : 1개반 2명(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측정장비 : 미세먼지 측정기 1대, CO, CO2, 포름알데히드 측정기 1대
- 측정방법
 - 측정 대상시설에 측정일정 사전 통보
 - 『실내 공기 질 공정 시험기준』에 준하여 측정
 - 시설별 이용시민이 많은 날(시간) 측정
- 측정 후 조치
 - 공중이용시설 주에게 관리 방안에 대한 리플릿 제공(서울시 제작)
 - 기준초과시설에 대해 행정지도 및 추후 실내 공기질 재 측정

소요예산 : 1,080천원(구비 1,080천원)

Ⅲ. 신규·주요투자사업

1 주택가 유해업소 특별위생점검

주택가 카페형 밀집지역의 청소년 유해행위, 퇴·변태 영업 등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청소년 보호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접객업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카페형 밀집지역의 집중단속을 통한 청소년 보호
- 퇴·변태 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위생수준 향상
-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카페형 밀집지역의 자진퇴출 유도

□ 추진방향

- 특별점검반 편성·운영으로 특별점검 강화
- 영등포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통한 단속 효율성 제고

□ 추진실적(2012년)

- 카페형 밀집지역 특별점검 : 상·하반기 2회
=> 점검 87개소(카페형 일반음식점) → 적발 12개소
- ※ 작년 점검은 민원에 의해서 실시, 금년은 신규사업으로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기 간 : 2013. 3~12월
- 점검방법
 - 분기별 : 3, 6, 9, 12월 실시
 - 주 간 : 야간단속시 병행 실시
- 대 상 : 79개소(당산동 61개소, 대림동 18개소)
- 점 검 반 : 4인1조 2개반(영등포경찰서 합동점검)
- 중점점검 사항
 - 청소년 출입·고용 등 청소년 유해행위
 - 퇴·변태 등 불법행위
 - 무허가 영업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유무 확인

○ 점검결과 조치사항 :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기대효과

○ 퇴·변태 영업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및
자진퇴출 유도

소요예산 : 비예산

2 먹는물 개선사업

공중위생업소에서 제공하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함.

□ 사업목표

- 공중위생분야 수준 향상으로 이용자 건강 증진

□ 추진방향

-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로 위생수준 향상 유도
- 위생 사각지대인 먹는물 관리에 대한 특화 관리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숙박업·목욕장업 전 업소(숙박업 262, 목욕장업 56)
 - 기 간 : 2013. 3 ~ 11월(9개월간)
 - 측 정 반 : 2인 1조(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1)
 - 수질검사 내역

검사대상	검사기준	검체항목	검사항목
정수기 냉온수기	먹는물 수질기준	냉수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탁도

- 측정방법 : 먹는물 채수하여 보건소 검사실에 검사의뢰
- 측정주기 : 연1회(상반기-숙박업, 하반기-목욕장업)
- 결과조치
 - 먹는물 수질기준 부적합 업소 행정처분
 - 공중위생업소 각 협회에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 홍보
 - 정수기·냉온수기 사용 업소는 세척 및 소독 관리주기 단축 제도
 - 숙박업소의 먹는물 정수기·냉온수기를 시판생수로 전환유도

- 소요예산 : 640천원(구비 640천원)